
❖ 석면피해구제기금 ❖

자산운용지침

(Investment Policy Statement)

2019. 4월

환경부

석면피해구제기금 자산운용지침

제정	2013.06.28.
1차 개정	2014.04.08.
2차 개정	2014.11.14.
3차 개정	2015.02.17.
4차 개정	2015.08.17.
5차 개정	2016.03.14.
6차 개정	2017.03.21.
7차 개정	2017.12.27.
8차 개정	2018.03.30.
9차 개정	2019.04.16.

[총 칙]

1. 개요

1-1. 자산운용지침의 개요

- 자산운용지침은 국가재정법 제79조(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에 따른 석면 피해구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자산 운용에 관한 기본 원칙과 주요 내용에 관하여 규정한다.
- 자산운용지침은 석면피해구제기금 자산운용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석면 피해구제기금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 본 지침의 내용은 1년 단위로 검토 및 수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자산운용지침은 기금의 자산운용과 관련을 맺고 있는 모든 조직 및 사람에게 적용되고 준수되어야 한다.

1-2. 자산운용지침의 목적

- 자산운용지침은 자산운용에 관한 내부관리자 및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게 기금자산 운용원칙 및 방향을 전달함으로써 기금의 자산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자산운용지침은 기금관리주체와 기금관리·운용위탁기관이 자산운용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지침으로 활용한다.

- 자산운용지침은 국가재정법을 준수하면서 기금의 자산운용·관리에 적합한 자산운용정책, 자산운용목표, 자산운용지침, 성과평가 등의 기준을 제시한다.

1-3. 기금의 개요

- 기금은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고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건강피해자와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2011년에 최초로 설치되었다.
- 기금관리주체는 환경부장관이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는 석면 피해구제법 제26조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기금의 주요 재원은 석면피해구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석면피해구제분담금, 가산금 및 그 밖의 법에 따른 정수금, 부당이익의 정수금, 기금운용 수익금, 적립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정부 또는 그 밖의 출연금 및 기부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차입금,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조성된다.

2. 자산운용 관련법규

- 기금의 운용은 국가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고 있다.
- 자산운용을 함에 있어 석면피해구제기금 관리 및 운용지침에 의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를 따른다.

3. 자산운용의 목적

3-1. 자산운용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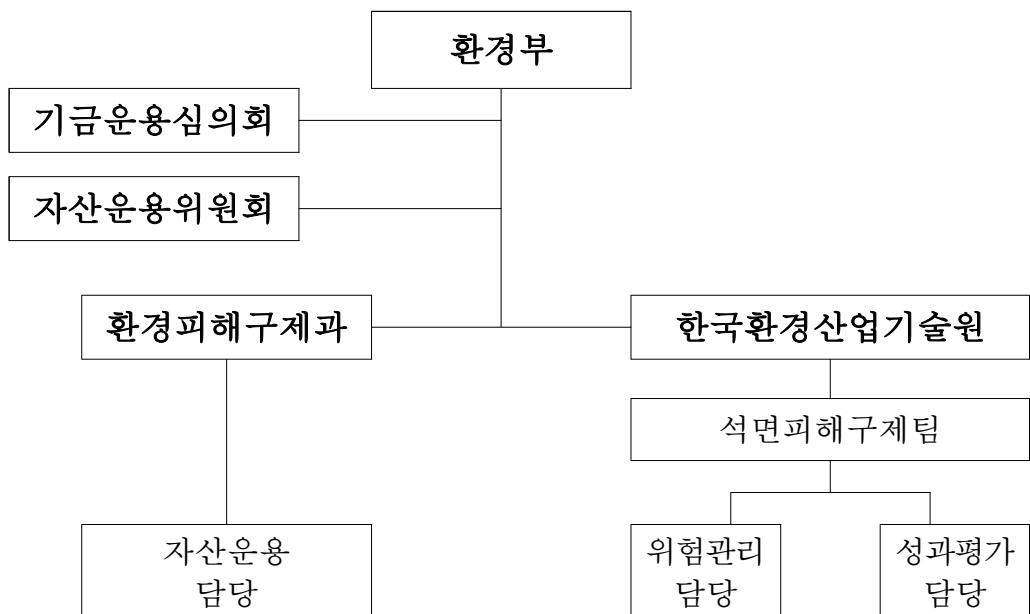
- 기금의 자산운용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건강 피해 예방·관리 사업 등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이며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3-2. 자산운용 원칙

-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국가재정법 제63조에 의거,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 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4. 자산운용체계

4-1. 의사결정 구조



4-2. 자산운용 조직과 역할

(1) 기금운용심의회(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에 해당)

- 기금운용심의회는 기금운용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환경부 내에 설치하며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기금운용심의회는 10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 자산운용위원회

- 기금운용의 투명성, 전문성 및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 내에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자산운용 전략에 관한 사항
 - 자산운용 평가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 연간 자금운영계획의 수립 및 변경
 - 목표수익률과 허용위험한도 설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 자산운용위원회 위원장은 환경부 기금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기술원 기금운용관련 팀장과 재무 및 위험관리 분야 외부전문가로 한다.

- 자산운용위원회의 외부전문가는 자산운용, 재무, 금융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 하되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외부 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기금운용 · 관리기관

- 기금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에 의해 관리 · 운용되며,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월별 자금수지계획 등 자금운용계획의 수립
 - 자금의 관리 및 운용
 - 기타 기금 자산의 운용과 관련된 사항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구제팀은 기금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며,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총 허용위험한도 준수 여부 모니터링
 - 운용수익률 분석 및 보고
 - 기타 기금 자산의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와 관련된 사항

[자산운용정책]

5. 자금운용 계획수립

5-1. 운용자금의 분류

- 운용자금은 아래와 같이 단기자금과 중장기 자금으로 분류한다.
 - 단기자금 = 1년 미만으로 운용되는 사업대기성 자금 + 적정유동성 자금
 - 중장기자금 = 총 운용가능자금 - 단기자금

구 분		정 의
단기 자금	현금성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금집행에 대응하기 위해 보유하는 수시입출금식 계정자금• 만기 3개월 미만으로 운용되는 금융자산(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3개월 이내로 운용되는 적정 유동성)
	유동성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동성을 일부 보충하면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환매성 있는 자산에 투자된 자금• 만기 3개월 이상~1년 미만으로 운용되는 자금(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3개월 이상~1년 미만으로 운용되는 적정 유동성)
중장기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금운용 수익성 제고를 위해 만기 1년 이상으로 운용되는 자산으로서 기금자산 중, 단기자금과 공자기금위탁금을 제외한 모든 중장기 투자가 가능한 자금을 의미

5-2. 자금 운용계획수립

(1) 자금수지 항목의 결정

- 자금의 현금흐름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금을 수입항목과 지출항목으로 구분한다.
- 수입항목과 지출항목은 다음과 같이 세부항목으로 다시 구분한다.

수입항목	지출항목
<input type="radio"/> 자체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 - 전년도 미수채권회수액 - 기타재산수입 - 기타경상이전수입 	<input type="radio"/> 기금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 기타운영비 - 정보화경비
<input type="radio"/> 정부내부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회계전입금 - 기금예탁이자 수입 	<input type="radio"/> 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면피해구제급여 - 석면건강영향조사 - 석면안전관리사업
<input type="radio"/> 여유자금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input type="radio"/> 여유자금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 각 수입 및 지출 항목의 규모, 시기, 속성 등을 분석하여 각 항목의 특성에 맞는 예측방법을 결정한 후 미래에 발생할 현금 유입액과 유출액의 규모 및 시기를 추정한다.

(2) 단기자금과 중장기자금 운용규모 결정

- 연간자금운용계획 수립 시, 당해 연도 단기자금 및 중장기자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전년도 12월 말잔 규모와 당해에 조성되는 총 규모를 합산하여 총 운용 규모를 도출하고 총 운용규모에서 당해의 기간별 운용규모를 뺀 여유 자금을 추정한다.
- 여유자금규모에서 적정 유동성(벼퍼) 규모는 현금성 자금 또는 유동성 자금으로 운용이 가능하다.
- 여유자금에서 적정 유동성 규모를 제외시킨 규모는 중장기 자금으로 운용한다.
- 설정된 당해 연도 단기자금과 중장기자금 규모는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결정한다.

6. 적정 유동성 규모주정

6-1. 적정 유동성 규모산정

- 당해 연도 사업대기성자금에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적정 유동성 규모를 산정함으로써, 유동성 위험을 대비하고 기금운용의 기본 목표인 안정성과 수익성을 제고한다.
- 적정유동성 규모 산출과정은 다음과 같다.
 - 1단계 : 기금의 과거 자금 유입과 지출의 추세 및 패턴 분석을 통해 자금의 특성 파악
 - 2단계 :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위험에 대비하여 95% 확률로 준비해야 하는 적정 유동성 규모의 목표수준(Target Level) 설정
 - 3단계 : 당해 사업 환경을 고려해 적정 유동성 관리기간을 설정하여 그 규모를 자금운용 계획에 반영
 - 4단계 : 향후 1년 내 사업비로 지출되지 않는 여유자금에서 일부를 적정 유동성 규모로 산출하고 이를 제외한 자금은 중장기로 운용
- 위의 산출과정을 통해 기금의 적정 유동성 규모는 과거 3개년 이상의 월별 수입 및 지출자료를 바탕으로 기간별 계획 순지출 대비 실제 순지출 오차의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95%확률로 통계적으로 산정하여 산출한다.
- 도출된 적정 유동성 규모는 연간자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한다.
- 기금의 2019년 적정유동성 규모는 95% 신뢰수준 목표관리기간 1개월 기준으로 1,524백만 원임

6-2. 적정 유동성 규모 반영 자금배분안

구 분		예상평잔(백만 원)	자금배분비율
전 체		15,280	100.00
단기 자금	현금성자금(3개월 미만)	사업대기성 적정유동성	1,148 1,524
	유동성자금(1년 미만)	사업대기성	88
	소 계		2,760
중장기자금	중장기자금(1년 이상)		12,520
			81.93

7. 목표수익률 및 허용위험한도

7-1. 목표수익률

- 목표수익률은 기금의 목적 또는 자산운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산운용정책에 따라 “사전적으로 설정하는 자산운용 수익률의 목표치”로써 자산배분을 통해 달성해야 할 요구수익률의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 자산별 목표수익률은 아래와 같이 장·단기로 나누어 자산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정한다.
 - 전체 자산의 목표수익률은 기금의 실질 가치 유지 목적을 위한 수익률로 소비자물가상승률, 무위험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설정
 - 단기 자산의 목표수익률은 단기자금 운용기간을 대표하는 금융자산인 MMF 예상 수익률로 설정
 - 중장기 자산의 목표수익률은 전체 자산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하도록 중장기자산에서 기금이 추구해야 할 수익률
- 2019년도 자산운용위원회에서 설정한 자산별 목표수익률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기 준	설정치(%)
기금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 + 무위험이자율 + α	2.21
단기자금	MMF 예상수익률	1.84
중장기자금	전체 목표수익률 달성을 위한 수익률	2.30

※ (기금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1.40%, 최근 7년 연평균상승률) + 무위험이자율(0.70%, 최근 7년 통안1년 평균실질수익률) + α (0.10%, 주식·채권의 위험프리미엄과 최근 1년 목표비중의 가중평균)
(단기자금) MMF예상수익률(1.84) = 기준금리(1.75) + 스프레드(연기금투자풀 MMF수익률과 기준금리와의 차이(3년 평균), 0.09%)

7-2. 허용위험한도

- 허용위험한도는 자산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결과(수익률 감소)에 대한 수용 가능성 정도를 의미하며 기금의 자산배분안 수립 시 제약조건으로 적용된다.

- 허용위험한도는 단기자금과 중장기자금을 분리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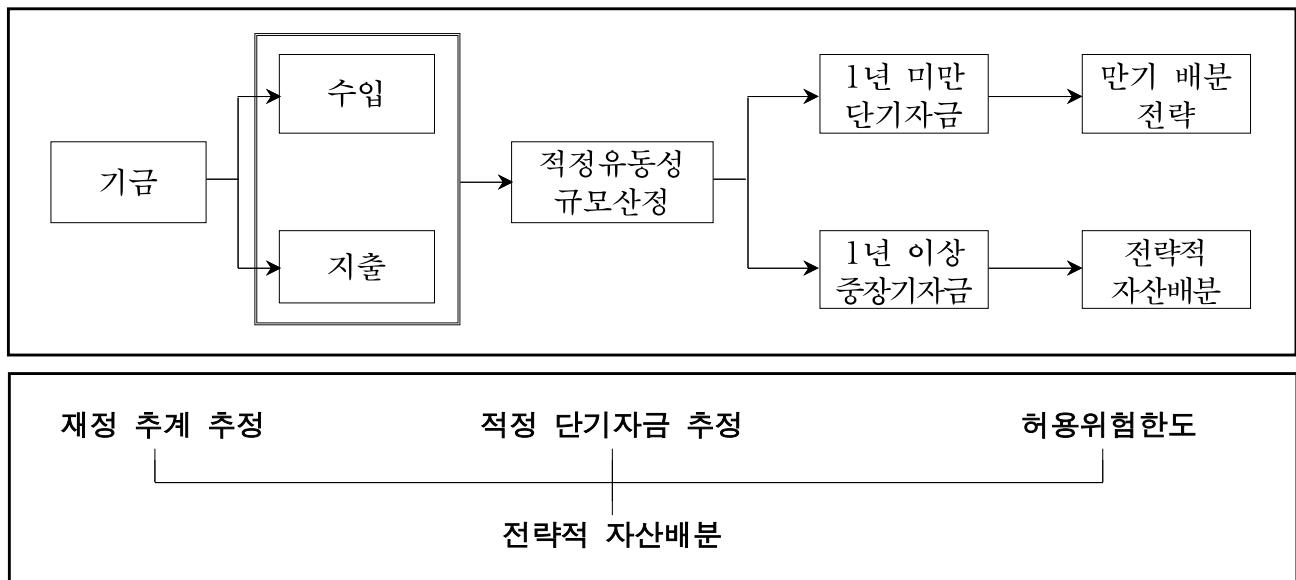
구 분	허용위험한도
기금전체	Shortfall Risk(원금) ≤ 2.5%
단기자금	Shortfall Risk(원금) ≤ 0.1%
중장기자금	Shortfall Risk(원금) ≤ 3.0%

※ Shortfall Risk는 특정한 수익률에 미달할 가능성을 말하며, 기금이 기금운용으로 인해 원금을 미달할 가능성으로 정의한다.

8. 자산배분

8-1. 자산배분의 원칙

- 기금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된 목표수익률과 허용위험한도를 기초로 하여 자산 배분을 실행한다.
- 자산배분안은 투자자산별 기대수익률, 위험(표준편차), 상관관계를 기초로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자금운용계획에 반영한다.



8-2. 운용대상 자산군(상품) 및 제한사항

- 기금은 석면피해구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재정자금에의 예탁,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기타 자금의 안정성·유동성 확보 및 수익성 제고가 가능한 금융상품에 투자한다.
- 제한사항
 - 신용등급 A-미만의 채권(CP는 A2)
 - 불공정 매매, 시세조정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유가증권

※ 단, 연기금투자풀의 실적배당형 상품은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

8-3. 금융상품 선정 기준

- 투자상품 선택 원칙
 - 투자상품은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투자상품의 선택은 자금수급계획, 자산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자산 배분계획 및 투자비중 한도를 기초로 결정한다.
 - 기금이 투자 가능한 자산을 아래와 같이 만기별 및 확정금리, 실적배당 상품으로 구분하여 투자한다.

구분	단기자산	중장기자산
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동성 : 환매가능성, 중도해지수수료, 3개월 평균 거래량(채권)· 안정성 : 금융기관 신용등급 C등급 이상· 수익성 : 금융기관 제시 평균금리 이상, 수익률이 동일한 경우 분산	
확정금리 상품	CD, MMDA, 정기예금, RP	CD, MMDA, 정기예금, RP
실적배당 상품	MMF, MMT, 채권형 수익증권, 연기금투자풀 운영상품	채권형 수익증권, 채권 혼합형 수익증권, 연기금투자풀 운영상품

※ 혼합형 수익증권의 경우 주식투자비중 30% 미만 상품에 투자

- 투자상품 선택 방법
 - 단기자금은 적정 유동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익성이 높은 상품을 선택한다.
 - 중장기자금은 운용한도, 자산배분안, 만기구조, 금융시장 전망 등을 감안하여 위험을 고려한 수익성이 높은 상품을 선택한다.

8-4. 전략적 자산배분안

- 제1단계 : 중장기규모 도출
 - 자금수지 분석을 통한 중장기자금의 규모 도출
- 제2단계 : 투자대상 자산군 선정
 - 기금의 목적과 투자 자산군 특성을 반영하여 투자자산군을 선정
- 제3단계 : 자산배분 계획 수립
 - 경제상황 및 금융시장 전망을 반영해 기대수익률, 위험, 상관관계를 추정하고, Shortfall risk 한도를 만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자산배분 계획 수립
- 제4단계 : 자산배분 모형 설정
 - 기금 운용 특성을 반영한 자산배분 모형 선택(평균 분산 최적화 모형 등)
- 제5단계 : 최적 자산배분안의 선택
 - 목표수익률 및 허용위험한도를 만족시키는 전략적 최적자산배분안 선택
 - 전술적 자산배분 허용제한범위 한도 설정
- 기금은 투자대상 자산군 및 자산배분 원칙에 의해 수립된 자산배분안을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간 여유자금운용계획에 반영한다.

8-5. 자산배분안

- 2019년도 자산운용위원회에서 심의 · 결정한 기금의 투자자산별 자산배분안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자금배분비율	허용범위
전 체		100.00	
단기 자금	현금성자금(3개월 미만)	17.49	±7.52
	유동성자금(1년 미만)	0.58	±0.58
	소 계	18.07	±8.10
중장기자금	확정금리형	8.19	±30.00
	채권	69.23	±30.00
	주식	4.51	-4.51 ~ +5.32
	소 계	81.93	±8.10

- ※ 자금시장의 변화에 따라 다소 변경할 수 있음
- ※ 소규모 사업성 기금 특성상 안정성 추구 및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주식 배분 비율을 낮게 설정함
- ※ 주식에 투자할 경우, 주가지수에 연동하도록 만든 'ETF 지수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권고(2019년 제1차 자산운용위원회 권고, '19.3.5)
- ※ 금리상승 등 외부요인에 따른 자금 수익률 훼손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확정금리형 상품의 비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확정금리형과 채권형 상품의 허용범위를 높게 설정(2019년 제1차 자산운용위원회 의결, '19.3.5)

8-6. 자산배분 재조정

- 금융시장 환경의 변화·자금 소요시기 조정 등으로 자금의 안정성에 피해가 예상되거나 운용수익률 제고 필요시에는 목적사업에 필요한 적정 유동성 규모를 감안하여 자산별 투자 비중을 자산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조정할 수 있다.

9. 직접운용 및 위탁운용

9-1. 직접운용 및 위탁운용 정책

- 기금의 자산운용은 내부인력을 이용한 직접운용과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위탁운용을 통해 운용한다.
- 직접운용과 위탁운용은 내부 인력의 전문성, 여유자금의 규모 및 투자 대상 상품의 성격을 고려하여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결정한다.

- 확정금리상품은 내부인력을 통하여 운용 할 수 있고, 실적배당상품(수익증권 포함)은 외부위탁투자기관을 이용하여 운용한다.
- 직접운용 시에는 [별표1 은행권 금융기관 선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신용도 및 총자산규모 등을 평가하여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운용한다.
- 위탁운용 시에는 기획재정부에서 선정한 연기금투자풀에 위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부위탁 전문기관을 통한 운용은 향후 기금의 규모와 운용전문 인력의 규모가 일정수준에 도달 했을 때 시행한다.
- 기금이 투자한 연기금투자풀 상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금융기관 및 금융상품 선정기준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므로 연기금투자풀 위탁관리정책에 따른다.
- 직접운용과 위탁운용에 대한 기금자산의 배분은 기금의 장단기 목표수익률 및 허용리스크한도 등을 고려하여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9-2. 외부위탁투자 기관

- 외부위탁운용사는 다음의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 연기금투자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무 및 투자자문업자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등

9-3. 위탁투자방법

- 위탁운용 계약에는 운용대상, 운용방법, 기준수익률, 손실허용한도, 성과 평가 등을 포함하며, 위탁수수료는 동일유형 펀드의 업계평균수수료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지급하도록 하여 덤핑 입찰을 금지한다.

9-4. 외부위탁투자기관 선정기준 및 관리방법

- 위탁운용사의 선정은 자산운용위원회에서 경영안정성, 운용사의 운용실적, 운용체계, 조직 및 인력, 운용전략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

하며, 운용수익률이 저조한 위탁운용사에 대하여는 수익률 제고방안 징구, 운용기법의 변경 요구 및 위탁자금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위탁운용사 선정 시, 수익률 보장과 같은 이면합의는 원칙적으로 금지 한다.
-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이하 주간운용사)가 복수일 경우, [별표 2 연기금 투자풀 주간운용사 자산배분기준]에 따라 주간운용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 단, 신규 주간운용사의 자금 운영에 대해서는 향후 1년까지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연기금투자풀 이외의 위탁운용사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표 3 외부위탁기관 선정 및 관리 기준]에 따라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자산운용위원회에서 정한다.
- 연기금투자풀은 연기금투자풀 운영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므로 기금이 투자한 연기금 투자풀 거래 금융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는 연기금 투자풀의 규정을 따른다.
- 연기금투자풀 이외 위탁운용사에 대한 평가는 [별지 3 위탁운용사 사후관리 평가결과 심의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자산운용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9-5. 만기도록 전 운용상품의 환매(매도) 및 상품교체정책

- 운용상품은 만기보유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행기관의 신용도 하락, 자금수지 변동에 따른 유동성 부족, 급격한 금융시장의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만기 전에 매도 또는 환매할 수 있다.
- 유동성부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지 시에 따른 손실이 적은 운용상품 부터 중도 해지 할 수 있다.
 - 실적배당형 상품, 확정형 상품의 순서로 중도 해지한다.
 - 확정형 상품은 단기자금을 중장기자금에 우선하여 해지하고, 약정금리가 낮은 순서대로 중도 해지한다.
- 환매(매도)한 자산의 상품교체는 아래의 만기도록상품 재투자 기준을 준용한다.

9-6. 만기도록 후 재투자 기준

- 단기자금의 만기도록액은 현금성자금으로 보유하고, 기금사업비에 충당한 후 잉여액은 적정 유동성 규모를 판단하여 수익성과 금융기관별 투자 한도 등을 고려하여 재투자 할 수 있다.
- 중장기자금의 만기도록액은 기금 사업비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나머지 자금은 재투자를 원칙으로 하며, 투자상품의 수익성, 유동성, 안정성, 자산배분비중, 만기구조 등을 고려하여 재투자한다.
- 단기자금의 재투자 시에는 상품별 조기환매 가능여부 및 중도해지 수수료를 고려한다.
- 만기를 연장하는 상품의 경우 종전 운용 유형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운용계획상 운용계획 변경 및 운용결과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경우에는 운용 유형을 달리할 수 있다.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10. 위험관리

10-1. 위험종류별 정의 및 위험관리 정책

(1) 유동성위험

- 정의 : 유동성위험은 예기치 못한 자금수요(지급수요)에 대응하지 못하여 손실을 입게 될 위험을 의미한다.
- 관리방법 : 월단위로 자금수지 계획 대비 실제 집행결과에 대한 변동성을 측정하고, 95% 신뢰수준으로 적정 유동성 규모를 관리한다.

(2) 신용위험

- 정의 : 신용위험은 거래 금융기관 또는 채권 발행기관의 부도로 인한 손실(default loss) 위험과 더불어 신용등급의 하락에 따른 손실(devaluation loss) 위험을 의미한다.
- 관리방법
 - 거래 금융기관 선정 시 BIS자기자본 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총자산순이익률(ROA) 및 신용평가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운용대상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의 신용등급에 따른 투자 한도를 설정하여 운용한다.
 - 집합투자 형태의 수익증권을 운용할 경우에는 편입되는 자산의 종목, 편입자산의 신용등급, 만기구조 및 구성 비율을 월간 단위로 내역을 점검하여 편입자산의 부실화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한다.

(3) 시장위험

- 정의 : 시장위험은 주가, 금리, 환율 등의 시장가격이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보유한 운용자산의 가치가 변화할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한다.

- 관리방법 : 시장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월간 단위로 95% 신뢰수준의 Market VaR를 계산하여 측정·관리하며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2019년 기금의 월간 Market VaR한도는 단기자금은 0.063%, 중장기 자금은 0.683%, 전체자금은 0.557%로 설정한다.

(4) 운영위험(Operation Risk)

- 정의 : 적절하지 않은 내부통제제도나 업무처리 절차, 시스템 오류, 직원의 실수 또는 부정 등으로 인해 기금에 손실이 초래될 위험을 의미한다.
- 관리방법 : 내부 통제조직은 관련 규정의 준수여부 및 실물자산 점검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위험을 관리한다.

	체크리스트 검토내용	평가상황
프로세스 리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서내의 부적절한 프로세스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리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 운용을 위한 의사결정 절차는 적절한가 - 투자대상 자산(상품)에 운용되는가 - 투자자금이 적절하게 배분되었는가 - 문서화 된 근거자료 및 적절한 승인 절차에 거쳐 자금이 집행되었는가 - 금융상품의 투자원금 손실 등의 위험 가능성에 대해 충분이 인지하였는가 - 예기치 못한 자금수요에 대비해 유동적 자금의 확보가 우선되었는가 	적정관리
인적 리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절한 인적자원관리, 직원에 대한 불충분한 교육 및 통제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리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한 이상의 행동을 취하지 않았는가 - 담당자 부재시나 인수인계시 업무의 공백이 생기지 않는가 	적정관리
내부통제 및 법규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법규 등 규정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내부통제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기금의 수입 및 지출내역 및 잔액을 확인하고 있는가 - 지출관인을 정해진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가 - 자산의 보관기능과 출납기능이 분리되어 있는가 	적정관리

10-2. 위험관리 조직 및 보고 체계

- 기금은 소규모 사업성 기금으로써 위험관리를 위한 개별 조직을 구성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기금의 위험관리는 수익에 비해 과도한 위험과 추가적인 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유동성·신용·시장·운영위험 등 발생 시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10-3. 연기금투자풀에 관한 예외조항

- 연기금투자풀은 자체적으로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위험관리기준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므로 기금이 투자한 연기금투자풀 상품의 위험관리는 연기금투자풀 위험관리 정책에 따른다.

11. 성과평가

11-1. 성과평가의 원칙 및 고려사항

- 성과평가는 자산배분 등을 포함한 투자 의사결정 주체의 권한을 명확하게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보유 포트폴리오로 인한 요인도 고려한다.
- 성과평가에 사용되는 운용수익률은 자산의 순자산가치가 반영되는 시가 수익률을 현금흐름에 조정된 시간가중수익률로 산출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투자자산군별로 벤치마크 지수를 설정하고 이를 성과평가의 기준으로 활용한다.
- 성과평가는 자산운용위원회에서 전담한다. 다만, 기금관리주체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성과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11-2. 성과평가의 기준 : 기준수익률

- 성과평가에 사용되는 운용수익률은 시간가중수익률로 산출하여 사용함이

원칙이며 투자자산별로 벤치마크 지수를 설정하고 이를 성과평가의 기준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기준수익률은 각 운용자산과 위험이 같거나 유사한 대체투자안의 실현수익률로 정의할 수 있다

(1) 기준수익률 설정 원칙

- 투자 자산별 기준수익률은 각 상품의 투자기간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운용기간을 갖는 대표적인 투자자산의 수익률(지수)을 사용하여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한다.

(2) 기준수익률 설정 방법

- 기준수익률은 자산배분에 사용된 자산별 벤치마크 지수의 실현수익률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다.
 - 자금운용의 성과평가를 위해 투자자산(상품)별 투자비중에 따른 가중 평균 수익률을 아래와 같이 설정한다.

$$\text{기준수익률} = \sum (\text{투자자산별 기준수익률} \times \text{투자자산별 투자비중})$$

- ※ 투자자산별 투자비중은 기준수익률 산출 시점에서의 실제 투자자산별 투자비중임
- ※ 각 투자자산별 기준수익률은 아래와 같이 각 상품의 투자기간과 동일한 만기를 갖는 대표적인 투자자산의 수익률(지수)을 사용할 수 있다.

투자자산			벤치마크 지수	제공기관
단기자산	확정형	현금성 (3개월 이내)	MMDA 수익률	한국은행
		유동성 (3개월 이상 1년 미만)	한국은행 고시 6개월 정기예금 이자율*	
	실적형	현금성 (3개월 이내)	MMF 업계평균 수익률	연기금투자풀
		유동성 (3개월 이상 1년 미만)	KIS국공채03~1Y 수익률	KIS채권평가
중장기 자산 (1년 이상)	확정형		한국은행 고시 1년 이상 2년 미만 정기예금 이자율	한국은행
	채권형		KIS국공채02~3Y 수익률	KIS채권평가
	주식형		KOSPI 지수 (배당수익률 포함)	한국거래소

* 한국은행 고시 6개월 정기예금 이자율은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는 “6개월 미만 정기 예금 이자율+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으로 계산함.

11-3. 성과평가의 방법

- 기금은 운용수익률 외에 정보비율(IR) 및 샤프비율(Sharpe ratio) 등 리스크를 고려한 리스크조정수익률을 산정하여 운용성과를 평가한다.
 - 정보비율(IR)은 기준수익률 대비 추가적으로 부담한 위험에 대한 초과 수익률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 샤프비율(Sharpe ratio)은 무위험자산을 초과 달성한 수익률을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으로 나눈 것으로 가격 변동성에 대한 보상비율을 의미하며 값이 클수록 성과가 우수함

11-4. 성과평가의 주기

- 자금운용의 성과분석을 통해 향후 자금운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분기별, 연간 자금운용 성과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성과평가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금융상품별 투자현황 및 운용수익률
 - 목표수익률 및 기준수익률 대비 운용수익률
 - 운용기관별 집중예치정도
 - 운용자산의 위험관리 등
- 성과분석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자산운용계획에 반영한다.

11-5. 성과평가 보상제도

- 자산운용담당자의 업무의욕 고취를 위해 성과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별도의 보상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1-6. 성과평가의 보고체계 및 공시

- 분기별 성과평가 결과는 자산운용위원회의 장(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장)에게 보고하며, 연간평가 결과는 자산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금관리 주체에게 보고한다.
- 연간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필요시 외부에 공개한다.

[선관주의 원칙]

12. 공시 및 감사

- 기금은 독립적인 외부전문기관 또는 내부 감사부서로부터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하며, 기금의 운용내역 및 성과에 대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한다.
 - 연간공시: 자산운용지침, 연간자금운용계획
 - 분기공시: 자금운용현황
 - 수시공시: 이외 자금운용의 주요결정 사항과 관련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3. 자산운용담당자의 행위준칙

- 기금의 모든 자산운용담당자는 기금 자산의 수탁자로서 최선을 다해 성실히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관계법령, 기금운용관련 제반규정 및 지침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며, 기금운용에 따라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주의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전문역량의 유지 및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투자관련 의사결정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에 기초하여야 한다.
 -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부당한 이익이 돌아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투자 및 기금운용 관련 의사결정은 적절한 연구와 조사에 의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 합리성과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적절한 기록들을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 투자를 행함에 있어 합리적인 주의와 판단을 바탕으로 유가증권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분석을 하여야 하며, 발행회사 등에 개인적 이해 관계나 특수 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상위 의사결정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분석이나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금품,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금리입찰, 수수료dump 등 금융기관 간의 과도한 예치경쟁을 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의하여 직무규범에 반하거나 객관적인 업무수행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위 의사결정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상위 의사결정 책임자는 관련자를 해당 의사결정에서 제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자산운용과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산을 운용했을 경우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면책된다.
- 금리약정, 손실보전을 위한 이면계약 등 불공정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4. 기타

14-1. 외부전문가 활용 등에 따른 비용 부담

- 기금자산 운용관련 법규나 본 지침에 의거 위촉되는 외부전문가 또는 운용성과나 위험관리평가 등을 위하여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기금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기금운영비로 지급할 수 있다.

14-2. 석면피해구제기금 여유자금운용지침의 폐지

- 이 지침 시행 전 석면피해구제기금 여유자금운용지침에 따라 시행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 이 지침 시행에 따라 석면피해구제기금 여유자금운용지침은 폐지한다.

[별표 1]

은행권 금융기관 선정 및 관리기준

(제9-1호 관련)

1. 은행권 금융기관 선정기준

- 은행권 금융기관 선정은 최근 결산기준 당기순이익이 흑자이고 금융기관 경영실태 평가의 주요항목을 수탁기관 세부선정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한다.
 - 은행권 금융기관 세부선정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배 점	평 가 방 법
자본 적정성 부문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	15점	순위 간 격차 1.0점
자산 건전성 부문	고정이하 여신비율	15점	순위 간 격차 1.0점
수익성 부문	총자산이익률(ROA)	10점	순위 간 격차 0.5점
수익성 부문	자기자본이익률	10점	순위 간 격차 0.5점
신용등급	신용평가등급	50점	등급 간 격차 5.0점
계		100점	

- ※ 1.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80점 이상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이 중 여유자금 규모를 감안하여 수탁기관의 수를 정한다.
 - 2. 평가항목별 지표는 금융감독원 자료를 활용한다.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영개선권고 및 경영개선요구를 받아 경영 정상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와 제시이율이 타 금융기관에 비하여 1000분의 3 이상 낮은 경우에는 금융기관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은행권 금융기관 자금 배분비율

- 은행권 금융기관 별 자금의 배분액은 금융기관별 금리 및 가중치 총합에서 해당은행 금리 및 가중치가 차지하는 비율로 억원 단위로 배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 가중치는 최저 금리로부터 높은 금리 순으로 1,3,5,7,9… 등 홀수로 하며 금리가 같은 경우에는 동일 순위로 한다.

$$\text{금융기관별 예탁금액} = \frac{\text{총배분액} \times (\text{금융기관별 금리} + \text{가중치})}{\text{금융기관별 금리 및 가중치 합계}}$$

- 예치기간이 만료된 만기자금을 재 예탁할 경우에는 신규 예탁금과 합산하여 수탁기관별로 자금 배분비율에 준하여 예치한다.

3. 금융기관별 예치한도

- 거래 금융기관별 예치비율은 연간 여유자금운용액의 35%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 2]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 자산배분기준 (제9-4호 관련)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 가 항 목(배점)		세부평가항목	배 점
운용성과 (80)	기금운용 및 위험조정성과	BM 대비 초과성과	40
		수정 샤프비율	20
		정보비율	20
정성평가 (20)	기금에 대한 이해도	기금운용 체계 및 현황파악 여부	3
		기금운용에 대한 개선방향 제시 여부	4
		기금투자 전략에 대한 파악 여부	3
		기금 특성에 맞춘 상품 종류	4
		투자시점별 적절한 상품추천 가능 여부	3
		장기적인 운용성과 보고 프로세스	3
컴플라이언스		계약조건 준수여부	감점평가(-10점)

※ 운용성과는 운용 시작 후 1년경과 후부터 측정 시작하며 유형별로 운용성과를 구분하여 산출

※ 주간운용사의 자금운용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전체기금 운용성과 평가함

2. 평가 지표별 점수배분 기준

1) 운용성과(80점)

BM 대비 초과성과(40점)

채권형	주식형	MMF	점 수	비 고
0.75%p 이상	3.0%p 이상	0.15%p 이상	40	
0.50%p 이상	2.0%p 이상	0.10%p 이상	35	
0.25%p 이상	1.0%p 이상	0.05%p 이상	30	
0.00%p 이상	0.0%p 이상	0.00%p 이상	25	
0.00%p 미만	0.0%p 미만	0.00%p 미만	20	
-0.25%p 미만	-1.0%p 미만	-0.05%p 미만	0	

※ 주간운용사별 연간 운용수익률로 사용(주간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자료 활용)

※ 운용성과는 유형별 통합펀드의 가중평균으로 산출

※ 혼합형은 각 주간운용사별 통합펀드 유형수익률로 가중 산출하여 점수화함

위험조정성과(수정샤프비율)(20점)

채권형	주식형	MMF	점 수	비 고
	2.0 이상		20	
	1.5 이상		16	
	1.0 이상		12	
	0.5 이상		8	
	0.0 이상		4	
	0.0 미만		0	

※ 주간운용사별 연간 운용수익률로 사용(주간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자료 활용)

※ 운용성과는 유형별 통합펀드의 가중평균으로 산출

※ 혼합형은 각 주간운용사별 통합펀드 유형수익률로 가중 산출하여 점수화함

※ 무위험 수익률: 통안증권 365일물 수익률 평균(한국은행 고시)

위험조정성과(정보비율)(20점)

채권형	주식형	MMF	점 수	비 고
	1.5 이상		20	
	1.0 이상		16	
	0.5 이상		12	
	0.0 이상		8	
	-0.5 이상		4	
	-0.5 미만		0	

2) 정성평가(20점)

기금에 대한 이해도(20점)

평가 항목	세부평가 내용	내용	배점	등급				
				A	B	C	D	E
정성평가 (20)	기금에 대한 이해도 (10)	기금운용 체계 및 현황 파악 여부	3.0	매우양호 (3.0)	양호 (2.5)	보통 (2.0)	미흡 (1.5)	매우미흡 (0.0)
		기금운용에 대한 개선방향 제시 여부	4.0	매우양호 (4.0)	양호 (3.0)	보통 (2.0)	미흡 (1.0)	매우미흡 (0.0)
		기금투자 전략에 대한 파악 여부	3.0	매우양호 (3.0)	양호 (2.5)	보통 (2.0)	미흡 (1.5)	매우미흡 (0.0)
	맞춤형 상품설계 (10)	기금 특성에 맞춘 상품 종류	4.0	매우양호 (4.0)	양호 (3.0)	보통 (2.0)	미흡 (1.0)	매우미흡 (0.0)
		투자시점별 적절한 상품 추천 가능여부	3.0	매우양호 (3.0)	양호 (2.5)	보통 (2.0)	미흡 (1.5)	매우미흡 (0.0)
		정기적인 운용성과보고 프로세스	3.0	매우양호 (3.0)	양호 (2.5)	보통 (2.0)	미흡 (1.5)	매우미흡 (0.0)

3) 컴플라이언스(계약조건 준수 여부) - 감점항목

계약조건 준수 여부	배 점	비 고
위반사실 없음	0	
경미한 위반 후 즉시 조치	-2	
경미한 위반 후 지연 조치	-4	
중대한 위반이나 즉시 조치	-6	
중대한 위반이며 지연 조치	-10	

3. 평가 점수별 자산배분기준

- 각 유형별 주간운용사별 득점 점수를 100으로 하여 배분비율 산정
 - A주간운용사 배분비율 = A주간운용사 유형점수/(A주간운용사 점수 + B주간운용사 점수)
- 유형별로 배분비중을 달리함
- 평가 점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산운용위원회에서 유형별로 결정
- MMF/매칭형 등으로 주간운용사별 동일상품 변동성이 큰 경우 조정 가능
- 자산 배분비율은 연간 운용평잔 기준이며, 허용범위는 ±10%p

[별표 3]

외부위탁기관 선정 및 관리 기준

(제9-4호 관련)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석면피해구제기금을 외부운용 함에 있어 필요한 위탁운용사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자금의 위탁운용을 위해 필요한 위탁운용사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따른다.

제3조 (선정 및 관리의 기본원칙) 위탁운용사의 선정과 관리는 자금의 운용을 통한 수익성과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 (자산운용위원회 심의·의결) 외부위탁기관의 선정 및 평가 결과는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최종 확정 된다.

제 2장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

제5조 (위탁운용사 선정 대상) ① 위탁운용사로 선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한 금융투자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호 모두에 해당하는 펀드를 최소 1개 이상 운용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운용하고 있는 운용사를 대상으로 한다.

1. 금융투자협회의 공시펀드 또는 수탁기관의 객관적 성과 검증이 가능한 일임펀드
2. 평가기준일 직전 1년 기간 중 설정액 50억원 이상, 6개월 이상 운용된 펀드
3. 기금 연간투자계획 상 투자하고자 하는 운용유형에 해당하는 펀드

제6조 (위탁운용사의 선정 등) ① 위탁운용사는 [별표 1 은행권 금융기관 선정 및 관리 기준], [별지 2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 따른 평가와 제안서 심사를 거쳐 선정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구술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위탁운용사의 선정시기는 연간자산운용계획에 따라 선정하되, 매년 1사분기 중에 연 1회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중에 추가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중에도 선정할 수가 있다. 다만 연기금투자풀에 전액 투자하여 위탁운용사의 선정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선정을 유예할 수 있다.

③ 위탁운용사의 선정은 [별표 1 은행권 금융기관 선정 및 관리기준], [별지 2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 따른 점수를 100%로 반영한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구술심사를 병행하는 경우 구술심사에 참여한 사람 전원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한 외부위탁기관을 제외한다.

④ 외부위탁기관을 선정하려면 운용하고자 하는 자산운용 유형, 상품유형, 상품운용의 주요 내용, 운용예정 금액, 제안자격, 제안서 제출기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운용계약의 체결) ① 최종 선정된 위탁운용사와 체결하는 계약서는 운용대상 및 규모, 위탁기간, 운용방법, 목표수익률, 기준수익률, 협용위험한도, 성과평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용사 선정 시 수익률 보장과 같은 이면합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제8조 (위탁운용기간 및 재투자여부) ① 위탁운용사의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별지 3 위탁운용사 사후관리 평가결과 심의기준]을 적용하여 평가된 운용성과에 따라 S등급의 경우, 1회에 한하여 1년 미만으로 재계약을 통한 계약연장이 가능하며, A등급 이하의 경우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자산운용위원회에서 계약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한 위탁자산을 회수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수한 위탁자산은 계약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다른 위탁운용기관의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추가로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위탁운용사의 평가 등) ① 매년 외부위탁기관별 자산운용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반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간이 3개월 미만인 외부위탁 기관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는 자산운용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3 위탁운용사 사후관리 평가결과 심의기준]에 따른 동 위원회의 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의 중지, 위탁규모의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월말 기준 누적운용수익률이 기준수익률 대비 80% 미만일 경우에는 위탁 운용기관으로부터 그 원인 및 향후 계획을 제출 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 (자금재배분) ① 위탁운용사의 자금재배분은 [별지 3 위탁운용 사후관리 평가결과 심의기준]을 적용하여 평가된 운용성과에 따라 반기별로 실시한다.
② 운용성과 평가는 자산운용위원회가 수행한다. 다만 위탁운용사가 1개인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생략한다.

제11조 (연기금투자풀에 대한 특례) 연기금 투자풀에 자산을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는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운용수익률 등 주요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기관을 통해 제공되는 성과보고서 등을 분석함으로써 연기금투자풀 위탁자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12조 (제한사항) ① 위탁운용 자산의 안정성과 유동성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피해구제과장이 위탁운용 조건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위탁운용 자산을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거래제한을 둔다.

1. 가중평균 드레이션은 BM의 1.5배 이내로 제한한다.
2. 금융채, 회사채, 특수채 등의 위험자산의 운용에 대해서는 투자대상 및 등급별 투자한도를 별도로 부여할 수 있다.
3. 기타 안전한 자산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둘 수 있다.

제 3장 판매회사 선정 및 관리

제13조 (판매회사의 선정 시기) ① 판매회사 선정을 위한 평가는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간자산운용계획의 변경 등으로 추가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중 추가 평가가 가능하다. 다만, 연기금투자풀에 전액 투자하여 위탁 운용사의 선정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선정을 유예할 수 있다.

제14조 (판매회사 선정 대상) ① 위탁운용사로 선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한 금융투자업자 가운데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100 이상인 투자중개업자 혹은 투자매매업자이거나 금융위원회의 동일한 지위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15조 (판매회사 평가) ① 판매회사 선정을 위한 평가는 [별지 1 판매회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 따르며 평가 결과에 따라 A, B, C 등급으로 분류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등급구분은 운용유형에 관계없이 선정된 전체 판매회사를 대상으로 평가 순위에 따라 구분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위 %에 해당하는 판매회사의 수가 정수가 아닌 경우에는 정수로 반올림한다.

<별지 1>

【판매회사 선정 및 관리기준】

1. 판매회사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점수	20점	16점	12점	8점	4점
신용등급	AAA	AA	A	BBB	BB
수익증권 취급수수료 수익	100억원 초과	70억원~100억원 이하	40억원 ~ 70억원 이하	10억원~40억원 이 하	10억원 이하
영업용 순자본비율	평균 + 30% 초과	평균 + 10%~평균 + 30%이하	평균±10%이하	평균 - 30%이상~ 평균-10%	평균 -30%미만
자기자본 이익률	평균 + 30% 초과	평균 + 10%~평균 + 30%이하	평균±10%이하	평균 - 30%이상~ 평균-10%	평균 -30%미만

비고: 신용등급은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의 가장 최근의 기업평가 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한다.

2. 판매회사 등급별 배분 및 투자한도

등급	등급배분	특정 증권사별 투자한도
A	평가순위 상위 40% 이내	여유자금운용금액 * 기준 30%이내
B	평가순위 상위 80% 이내로서 A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여유자금운용금액 * 기준 20%이내
C	A급이나 B급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여유자금운용금액 * 기준 0%이내

비고: 여유자금운용금액은 투자시점의 총 여유자산의 평잔규모

* 다만 여유자금운용금액이 투자 유형별로 A등급 투자한도가 50억원에 미달할 경우, 최상위 등급 판매회사에 전액 위탁 가능함

<별지 2>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

1. 위탁운용사 1차 선정 기준

평가항목 평가점수	20점	16점	12점	8점	4점
자산운용 전문인력	40인 초과	40인 이하	30인 이하	20인 이하	10인 이하
간접투자기구 설정현황	1.25조원 이상	1조원 이상~1.25조원 미만	0.75조원 이상~1조원 미만	0.5조원 이상~0.75조원 미만	0.5조원 미만
운용보수수익	200억원 이상	150억원 이상~200억원	100억원 이상~150억원	50억원 이상~100억원	50억원 미만
단순 자기자본비율	평균 + 30% 초과	평균 +10% ~평균 +30%이하	평균±10% 이하	평균 -30%이상 ~평균-10%	평균 -30%미만
총자산 순이익률	평균 + 30% 초과	평균 +10% ~평균 +30%이하	평균±10% 이하	평균 -30%이상 ~평균-10%	평균 -30%미만

2. 위탁운용사 2차 선정 기준

평가항목 평가점수	배점	배점 방법
운용유형상품의 초과수익률	20점	
운용유형상품의 수탁고	20점	
제안수수료	20점	
연기금 운용경험	20점	
투자, 리서치, 위험관리 등	20점	제안사 순위기준으로 10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배점 (구간별 2점차,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계산) 투자지침(3), 투자결정위원회 등 다수에 의한 의사결정시스템(3), 리서치 조직(3), 위험관리기준(3), 위험관리 전담조직(3), 준법기준(3), 준법감시 전담조직(2) * 해당사항이 있으면 팔호안 점수 부여, 없으면 0점

3. 위탁운용사 등급별 배분 및 투자한도

등급	등급배분	특정 증권사별 투자한도
A	평가순위 상위 20% 이내	여유자금운용금액 * 기준 30%이내
B	평가순위 상위 50% 이내로서 A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여유자금운용금액 * 기준 20%이내
C	A급이나 B급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여유자금운용금액 * 기준 0%이내

비고: 여유자금운용금액은 투자시점의 총 여유자산의 평잔규모

* 다만 여유자금운용금액이 투자 유형별로 A등급 투자한도가 50억원에 미달할 경우, 최상위 등급 자산운용사에 전액 투자 가능함

<별지 3>

【위탁운용사 사후관리 평가결과 심의기준】

등급	분류기준	등급별 조치
S등급	①최근 1년간 1회 이상, 최근 3년간 3회 이상 동일 유형 상위 25% 이내에 포함 ②목표수익률대비 초과성과 달성 ③유형평균대비 초과성과 달성 ④BM대비 초과성과 달성 ⑤시장동일유형 IR 초과 ⑥을 반드시 포함하고 4가지 항목 이상 충족	추가배정 (신규위탁 및 투자회수 자금 총액의 50% 이내)
A등급	①최근 1년간 1회 이상, 최근 3년간 3회 이상 상위 50% 이내에 포함되나 S등급에 해당되지 않음 ②목표수익률대비 초과성과 달성 ③유형평균대비 초과성과 달성 ④BM대비 초과성과 달성 ⑤시장동일유형 IR 초과 ⑥을 반드시 포함하고 3가지 항목 이상 충족	추가배정 (신규위탁 및 투자회수 자금 총액의 25% 이내)
B등급	S, A 또는 C 등급으로 분류되지 않음	-
C등급	최근 2년간 2회 이상 상위 75% 이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최근 2년(운용기간 2년 미만은 설정 후) 누적 운용수익률이 시장 동일유형 상위 50% 이내에 포함되지 아니함	① 전액회수 - BM 하회 또는 동일유형 75% 하회 시 - 감액 후 1회제외 1년내 C등급 해당 시 ② 50% 감액 - BM 상회 & 동일유형 75% 이내 시 단, ①,②항은 자산운용위원회의 예외승인을 받을 수 있음.

* 운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항의 평가 항목은 평가를 달성한 것으로 간주하며,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 재계약 여부 평가시에는 2항부터 5항까지의 평가항목은 연간 수익률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자금재배분을 위한 성과평가 시에는 2항부터 5항까지의 평가항목은 반기 수익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계약내용 위반, 운용인력 변동, 운용일관성 부족이 발생할 경우 자산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용사 등급을 한단계 낮출 수 있음

[별표 4]

자산운용 위험관리기준

(제10호 관련)

1. 목 적

- 기금의 자산운용 상 발생하는 각종 위기상황에 대하여 위험관리기준에 의거 이를 조기에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유지하기 위함

2. 위기상황

- 기금의 존립 및 경영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정도의 사태가 발생하여 기금의 자본과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는 상황

단계별 위기상황

정상단계

- 위기상황 판단지표의 수준이 통상수준을 유지하는 상태

주의단계

- 위기상황 판단지표의 수준이 통상수준으로부터 일정부분 불리한 방향으로 이탈하여 위기상황에는 미달하나 근접해가는 상태로서, 사전에 기금이 보유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단계

위험단계

- 위기상황 판단지표의 수준이 위기상황에 근접한 상태로 기금 손실 최소화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는 단계

3. 위기상황 판단지표

- 유동성, 신용, 시장, 운영위험별 위기상황 판단지표 구성
- 위기상황 판단지표는 담당부서가 모니터링 및 관리

구 분		정 상	주 의	위 혐
유동성 위험	판단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정유동성 규모 100% 이상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정유동성 규모 20영업일 연속 100% 미만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정유동성 규모 20영업일 연속 70% 미만 유지
	대응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운용위원회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금수지계획 점검 자금조달방안 마련 자산운용위원회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금수지계획 점검 운용상품 환매 검토 자산운용위원회 보고
신용 위험	판단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기관 신용등급 유지 기관별 한도 내 예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년 내 예치 금융기관 신용등급의 1단계 하락 기관별 예치한도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년 내 금융기관 신용등급의 2단계 하락 기관별 예치한도 초과 기관 안정성과 관련된 중요사항 발생
	대응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적인 신용등급 점검 자산운용위원회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신규투자 제한 자산운용위원회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치 자금에 대한 회수 등 필요한 조치 이행 자산운용위원회 보고
시장 위험	판단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VaR 한도소진율 70%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VaR 한도소진율 70%~100%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VaR 한도소진율 100% 초과
	대응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운용위원회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상황 및 변동성 확대 원인 파악 상황 정리 후 자산운용위원회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상황 및 변동성 확대 원인 파악 전문가 의견 수렴 후 해지 또는 포트폴리오 조정 검토 상황 정리 후 자산운용위원회 보고
운영 위험	판단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적인 체크리스트 확인 및 감사 결과 특이사항 미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적인 체크리스트 확인 및 감사 결과 특이사항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적인 체크리스트 확인 및 감사 결과 중대한 특이사항 발생
	대응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운용위원회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인파악 및 대응방안 마련 관계자 주의 통보 자산운용위원회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인파악 및 대응방안 마련 관계자 징계여부 결정 자산운용위원회 보고